

[별표 7] <개정 2005.9.16>

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
(제59조제1항관련)

1. 하자의 범위

- 가.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
- 나.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

2.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

- 가. 기둥 · 내력벽(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) : 10년
- 나. 보 · 바닥 및 지붕 : 5년